

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1999. 6. 24
- 나. 제안자 : 부천시장
- 다. 회부일자 : 1999. 6. 25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
 - 제71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(99. 7. 6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행정지원국장 이중욱)

- 가. 제안이유
 - 시립도서관 북부분관이 1999. 6. 1일자로 개관되었고
 - 경기도 도정 12200-573(1999. 6. 2)호로 시립도서관 전담인력을 보강하도록 통보함에 따라 개정
- 나. 주요골자
 - 정원 승인 인원 : 3명
 - 직급 및 직렬 : 지방사서주사 1명(북부분관장 요원), 지방사서주사보 1명, 지방사서서기 1명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정원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았습니까? ○ 현재 2차 구조조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3명의 정원은 순증인가요?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받았습니다. ○ 정원이 3명 증가하는 순증입니다.

4. 토론요지

- 가. 찬성토론
 - 없음
- 나. 반대토론
 - 없음

5. 심사결과

-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요지

-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166호
의결년월일	99. 7. 8 (제71회)

제출년월일 : 1999. 6. 24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제안이유

- 시립도서관 북부분관이 99. 6. 1일자로 개관되었고
- 경기도 도정12200-573(99. 6. 2)호로 시립도서관 전담인력을 보장하도록 통보함에 따라 개정

주요골자

- 정원 승인 인원 : 3명
- 직급 및 직렬 : 지방사서주사 1명(북부분관장 요원), 지방사서주사보 1명, 지방사서서기 1명

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

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중 집행기관 "2,024명"을 "2,027명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